

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(승인)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① 성명(대표자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상호(법인명)	④ 전화번호
	⑤ 사업장(본점) 주소	

과세 문서	⑥ 과세문서 구분	과세문서명	통당 세액	현금납부표시할 과세문서 통수	현금납부할 세액	현금납부 표시방법

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		
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쇄소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
	상호(법인명)		전화번호 팩스번호	
	사업장 소재지		인쇄 예정일	

「인지세법」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승인번호: 년 호

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인

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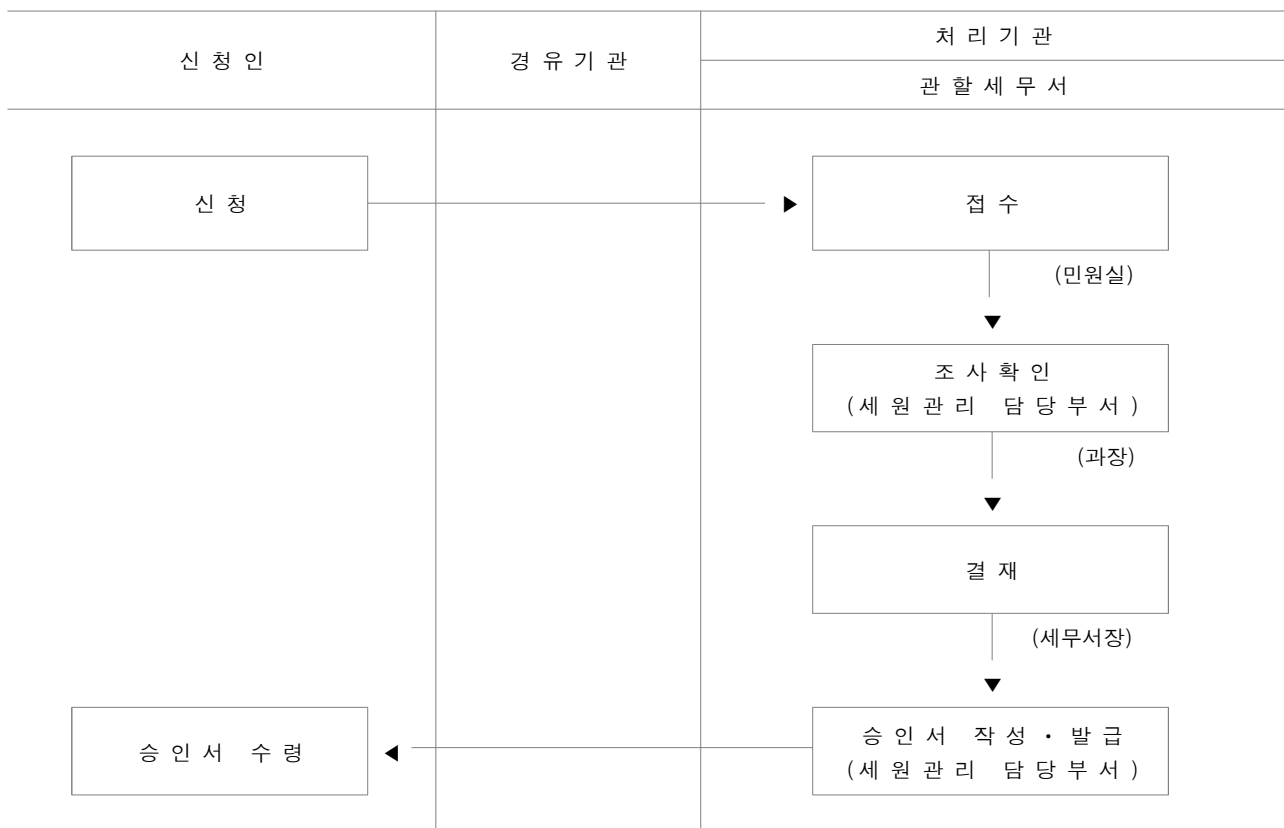
작성방법

이 신청서는 현금납부 선납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해당 중앙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
1. "신청인"란의 ① ~ ⑤는 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의 내용을 적습니다.
2. "⑥ 과세문서 구분"란에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. (예: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"제7호가목"으로 적습니다)
3. 별첨의 "지역조합 명세서"는 「인지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[별첨]

지역조합 명세서

[illegible]